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2년 3월 5일  
(월요일)

서울일보

2012년 03월 05일 월요일  
005면 지역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최

## 의정활동 제도적 장치 마련

강북구의회는 지난 2일 11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제 15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등을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제4조 1호),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로(제4조 2호) 각각 변경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도연 의원이 발의했다.

신하식 기자shs@seoulibo.net

시대일보

2012년 03월 05일 월요일  
006면 서울

##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유 군성)는 2012년 3월 2일 11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제 15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결정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제4조 1호),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로(제4조 2호) 각각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도연 의원이 발의하였다.

구주회기자 mc355@hanmail.net

### 제158회 임시회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제15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제15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연 의원 발의) 등을 처리했다.

특히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위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제4조 1호),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로(제4조 2호) 각각 변경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 새한일보

2012년 03월 05일 월요일 003면 종합

## 건축조례개정안 본의회 통과

### 박문수 의원, 독단적 위원회 구성 방지 성과내

이금연 기자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가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이루어낸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문수 의원은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되어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것을 ‘위원

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지정하는’으로 수정해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순번으로 정하여 참석여부를 타진한 후 참석 가능한 위원을 위원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가 이루어져 매우 기쁘며 또한 대표발의를 한 신승호 시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축행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믿음을 못주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이 건축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우리일보

2012년 03월 05일 월요일 010면 지역종합

## 박문수 의원, 제도개선사항 서울시 조례 개정 성과 이뤄

###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본회의 통과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 되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돼 회의를 진행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

마다 지정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으로 수정해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순번으로 정해 참석여부를 타진한 후 참석 가능한 위원을 위원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박문수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가 이루어져 매우 기쁘며 또한 대표발의를 한 신승호 시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축행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믿음을 못주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이 건축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준길 기자

jksong@wooriilbo.com